

# 정정신고(보고)

2024년 8월 9일

## 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일괄신고서

삼성코리아소수정예증권자투자신탁 제1호[주식]

## 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09. 4. 17

## 3. 정정 사유

- 정기 결산으로 인한 갱신(위험등급 분류기준 개편안(97.5% VaR) 반영, 재무정보 확정)
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- 기업공시서식 개정 반영

## 4. 정정요구·명령 관련 여부 : 아니오

## 5. 정정사항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요약정보		
투자비용	-	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	-	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업데이트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5. 운용전문인력	-	업데이트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 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. 추후 매 결산 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다시 측정하게 되며,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이 변동될수 있습니다.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-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(97.5% VaR 모형 사용)을 감안하여 투자위험 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. 추후 매 결산 시마다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 예상액을 다시 측정하게 되며, 이 경우 투자위험 등급이 변동될수 있습니다.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								
	주2)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는 18.7%입니다.	주2)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97.5% VaR는 34.57%입니다.								
11. 매입, 환매, 전환 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 기준	나. 환매 (추가)	나. 환매 (9) 환매 가능 여부 및 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중도환매를 허용하는 투자신탁입니다.  수익증권의 중도환매 및 수수료 부과에 따른 3단계 구분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33%;">중도환매 불가</td> <td style="width: 33%;">중도환매시 비용 발생</td> <td style="width: 33%;">중도환매 가능</td> </tr> </table>	중도환매 불가	중도환매시 비용 발생	중도환매 가능					
중도환매 불가	중도환매시 비용 발생	중도환매 가능								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업데이트								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사항]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주요 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연금소득 분리과세</td> <td>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 1.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2. 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3. 1호 및 2호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,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단, 연간 1,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가능 (2023년1월1일 이후 연금 수령분 부터 적용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주요 내용	연금소득 분리과세	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 1.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2. 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3. 1호 및 2호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,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단, 연간 1,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가능 (2023년1월1일 이후 연금 수령분 부터 적용)	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사항]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주요 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연금소득 분리과세</td> <td>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 1.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2. 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3. 1호 및 2호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,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단, 연간 1,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가능 (2024년1월1일 이후 발생 소득분 부터 적용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주요 내용	연금소득 분리과세	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 1.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2. 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3. 1호 및 2호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,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단, 연간 1,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가능 (2024년1월1일 이후 발생 소득분 부터 적용)
구분	주요 내용									
연금소득 분리과세	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 1.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2. 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3. 1호 및 2호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,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단, 연간 1,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가능 (2023년1월1일 이후 연금 수령분 부터 적용)									
구분	주요 내용									
연금소득 분리과세	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연금소득 1.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2. 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 3. 1호 및 2호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,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단, 연간 1,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% 분리과세 선택가능 (2024년1월1일 이후 발생 소득분 부터 적용)									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								
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-	업데이트								
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							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라. 운용자산 규모 -	라.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								